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·주의 요구

제　　목　**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**

기 관 명　울산광역시 ○○군

훈계대상자　① 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사무소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○○과)

③ 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사무소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○○과)

내　　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7. 13.부터 2017. 7. 13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은 2016. 7. 14.부터 2018. 1. 1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는 2016. 1. 1.부터 2017. 6. 30.까지 각각 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○○과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 실무담당자,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 근무하였다.

울산광역시 ○○군에서는 농촌의 다양한 기반을 자원으로 1차·2차·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·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조직, 생산자단체,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[표]와 같이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.

[표]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대상자	지원조건	사 업 예 산				주요사업
		계	국고	지방비	자부담	
3개소 (○ ○ ○협, ○ ○농협, ○ ○농협)	국 고 50% 지방비 30% 자부담 20%	511,149	250,000	150,000	111,149	로컬푸드직매장, 저온저장고, 선별장, 순회수집차량, 수출선과장 개보수 등

※ 2014~2015년 보조사업비 400백만원 이월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,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「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르면 시·군·구에서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·연구소, 경영·유통 분야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고, 원칙적으로 공모제를 실시하되 10일 이상 공모기간을 거쳐야 하며,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지역내 농축산물 매입실적, 부지확보 가능성, 자부담 능력, 농가소득과의 연계성,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건전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아닌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, 일부 대상자에게 한정된 공문을 시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말고 일간지·지방지 등 언론매체, 기관홈페이지,

게시판, 반상회 회보 등 신청자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
특히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계획 수립시 주변 환경여건,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, 부득이하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동 사업자 선정시 배제시켜야 한다.

그런데 정부합동감사 기간(2018. 2. 26.~3. 16.) 중 사업자 선정 과정을 확인한 결과, 위 관서에서는 2014년 당초 사업대상자인 ○○○○○○○협동조합(이하 '○○○협'이라 한다)이 ○○군 ○○면 ○리 00-0번지 부지 4,941㎡에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사회에서 고정자산 추가 투자 및 예정 부지 근처에 ○○농협의 ○○○○○ 신축 계획으로 인한 지역간 사업 경합 우려 등의 반대로 2015. 7. 13. 사업을 포기하였고,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7. 29. ○○○협 대신 ○○농협을 사업자로 변경 선정하였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○○농협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규모를 축소(500백만원→120백만원)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하자 또다시 2016. 7. 4.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추가신청 공문을 시행하여 ○○○협과 ○○농협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다.

○○○협(사업부지 변경 : ○○군 ○○읍 ○○길 00) 및 ○○농협(○○면 ○○○로 000) 사업 신청안과 ○○농협(○○면 ○○로 000) 사업비 변경안 등 3건[1]을 해당 심의위원에게 공문 통보없이 내부방침(○○○○과-00000, 2016. 0. 00, 국장결재)만으로 ○○○○선정심의회에 2016. 7. 26. 서면심의 상정하였다.

---

1) 심의안건 : ○○농협 사업비 축소(500,000천원→120,633천원), ○○○협(242,953천원) 및 ○○농협(242,953천원) 대상자 선정

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의과정에서 잦은 인사이동[2]과 담당자 업무숙지 미흡으로 2015년 0월 00일 사업을 포기한 ○○○협을 사업 심의 대상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, 무엇보다도 ○○○협 조합장(○○○)이 '○○○○ 심의위원'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○○○○○○○ 심의위원 8명[3]에 포함하여 위촉한 후 서면 심의(담당자, 계장 직접방문 설명)를 실시해 참여자 7명[4] 전원 찬성으로 사업대상 자격이 없는 ○○○협을 부적정하게 추가 사업대상자로 ○○군 ○○○○국장 결재(○○○○과-00000, 2016 .0. 00.)를 받아 확정하였으며, 같은 해 12월말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.

조치할 사항 **울산광역시 ○○군수는**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를 실시하고,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---

2) 담당자 4명 교체(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4~6개월 근무)
3) 위촉위원(○○중앙회 ○○○지부장 ○○○, ○○○○센터소장 ○○○, 울산○○○○조합장 ○○○, 울산○○조합장 ○○○, 울산○○영농조합법인대표 ○○○, 울주○○○○반장 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군연합회장 ○○○, 울산○○○○모임회장 ○○○
4) 울산○○조합장 ○○○ 미참석